

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·물건 열람·등사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3쪽 중 1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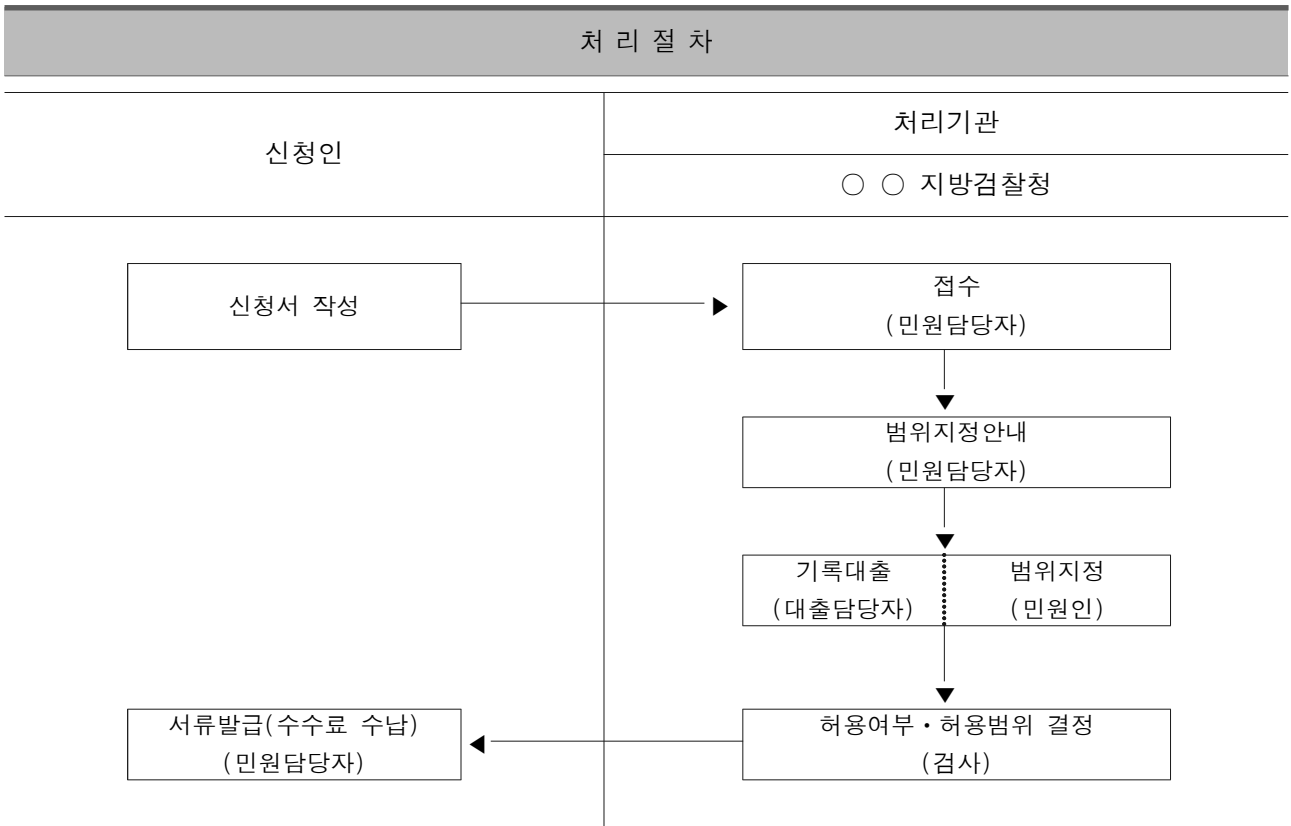
접수번호		접수일자	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	사건과의 관계	[] 피해자(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·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) 또는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[] 피해자 또는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, 변호사 ※ 피해자 또는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·직계친족·형제자매·변호사의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	
사건	사건번호	피고인	
	년 형제 호 죄 명	외 명	
신청사유	[]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[] 피해자 등의 해당 사건 진술권 보장 (관련 사건번호 및 사건 내용 :)		
신청내용	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·물건의 열람·등사		

「형사소송법」 제29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·등사를 신청합니다.

신청인 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

검사 결정	허가	불허가	사용 목적 제한	조건부 허가
	☑	☑	☑	☑



사용 목적 제한 또는 조건의 내용

순번	서류·물건의 목록	허가 여부			비고
		허 가	불허가	사용 목적 제한 또는 조건부허가	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6					
7					
8					
9					
10					
11					
12					
13					
14					
15					

※ 목적 제한 또는 조건의 구체적 내용 등을 비교란에 기재